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민간학회 학술대회 지원 부적정

소 관 기 관 감사원

조 치 부 서 감사연구원

내 용

감사연구원은 국내 학회 및 기관과의 교류협력 등을 위해 사단법인 ○○학회 등 민간단체의 학술대회를 지원하고 있다.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비영리법인·단체 등 민간부문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자체부담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민간이 주관하는 행사를 지원할 경우에는 민 간 보조사업인 것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예산을 편성·집행하도록 되어 있다.1)

또한 위 지침 및「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이 행사를 주관하는 경우 경비의 성질에 따라 예산을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하여 행사에 필요한 물품 등을 일반수용비²⁾ 등의 예산과목으로 편성·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이 주관하는 행사 경비는 필요할 때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여 집

¹⁾ 민간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중 개최횟수가 총 7회를 초과하는 행사의 경우 예산 요구시 그간의 성과, 계속지원 필요성, 지원종료계획 등이 포함된 자체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비 총액만을 작성하여 행사주관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사개최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

²⁾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또는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비에 사용되는 예산과목(210-01목)

행하여야 하고, 일반수용비 예산으로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위 부서는 2018. 12. 13. ○○학회가 주최한 "2018년 ○○학회 동계학술대회"(행사기간: 2018. 12. 14.~12. 15.)에 행사지원 목적으로 5백만 원을 지급하는 등 [별표] "2018년 민간학회 학술대회 경비 지원 현황"과 같이 5개 학회에총 19백만 원을 보조금이 아닌 감사연구활동경비(세부사업)의 일반수용비 예산으로 집행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감사연구원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민간학회와 학술대회 공동개최 등 관련 규정에 맞게 일반수용비를 집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감사연구원장은 앞으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등 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2018년 민간학회 학술대회 경비 지원 현황

(금액단위: 원)

연번	학회명	행사명	행사기간	지급일자	지급금액
1	(사)○○학회	2018년 ○○학회 동계학술대회	2018. 12. 14. ~12. 15.	2018. 12. 13.	5,000,000
2	(사)☆☆학회	2018년 ☆☆학회 추계학술대회	2018. 11. 22.	2018. 12. 10.	3,000,000
3	(사)★★학회	2018년 ★★학회 동계학술대회	2018. 12. 7.	2018. 12. 5.	5,000,000
4	(사)◎◎학회	2018년 ◎◎학회 추계학술대회	2018. 11. 2.	2018. 11. 1.	3,000,000
5	(사)◆◆학회	2018년 ◆◆학회 추계학술대회	2018. 11. 9.	2018. 10. 24.	3,000,000
합계					19,000,000

자료: 감사대상부서 제출자료 재구성